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 27(당)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도원회계법인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6
- 운영성과표	7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 귀중

2026년 2월 24일

감사의견

우리는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기타의 보고 책임

법인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법인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는 해당 기간 지방보조금의 운영성과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공익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5년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법인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공익법인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써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도원회계법인

대표이사 강기철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6년 2월 2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공익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제 27(당) 기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26(전) 기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김 현 훈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공덕동 서울복지타운)

(전 화) 02-2021-1721

재 무 상 태 표

제 27(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6(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단위: 원)

과 목	제 27(당)기말			제 26(전)기말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I. 유동자산	1,140,455,065	1,140,455,065	-	1,394,887,070	1,394,887,070	-
(1) 당좌자산	1,106,328,665	1,106,328,665	-	1,387,965,583	1,387,965,583	-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1,105,133,175	1,105,133,175	-	1,386,210,803	1,386,210,803	-
미수금	1,000,000	1,000,000	-	1,480,000	1,480,000	-
당기법인세자산	195,490	195,490	-	274,780	274,780	-
(2) 재고자산	34,126,400	34,126,400	-	6,921,487	6,921,487	-
기부물품(주석8,12)	34,126,400	34,126,400	-	6,921,487	6,921,487	-
II. 비유동자산	116,799,724	116,799,724	-	185,265,737	185,265,737	-
(1) 유형자산(주석5)	78,804,145	78,804,145	-	129,066,268	129,066,268	-
차량운반구	56,730,000	56,730,000	-	56,730,000	56,730,000	-
(-) 감가상각누계액	(34,344,000)	(34,344,000)	-	(24,750,000)	(24,750,000)	-
비품	121,083,380	121,083,380	-	141,779,640	141,779,640	-
(-) 감가상각누계액	(64,665,235)	(64,665,235)	-	(44,693,372)	(44,693,372)	-
(2) 무형자산(주석6)	37,995,579	37,995,579	-	56,199,469	56,199,469	-
소프트웨어	37,995,579	37,995,579	-	56,199,469	56,199,469	-
자 산 총 계	1,257,254,789	1,257,254,789	-	1,580,152,807	1,580,152,807	-
부 채						
I. 유동부채	231,739,289	231,739,289	-	397,646,692	397,646,692	-
미지급금	176,013,781	176,013,781	-	348,595,436	348,595,436	-
예수금	55,725,508	55,725,508	-	49,051,256	49,051,256	-
II. 비유동부채	-	-	-	-	-	-
I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231,739,289	231,739,289	-	397,646,692	397,646,692	-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	-	-	-	-	-	-
II. 보통순자산(주석7)	1,025,515,500	1,025,515,500	-	1,182,506,115	1,182,506,115	-
잉여금	1,025,515,500	1,025,515,500	-	1,182,506,115	1,182,506,115	-
순 자 산 총 계	1,025,515,500	1,025,515,500	-	1,182,506,115	1,182,506,115	-
부 채 및 순 자 산 총 계	1,257,254,789	1,257,254,789	-	1,580,152,807	1,580,152,80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27(당)기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26(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단위: 원)

과 목	제 27(당)기			제 26(전)기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 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업수익	11,918,954,494	11,918,954,494	-	11,585,616,355	11,585,616,355	-
회비수익	29,320,000	29,320,000	-	30,520,000	30,520,000	-
기부금수익(주식8,12)	7,361,542,300	7,361,542,300	-	7,141,093,838	7,141,093,838	-
보조금수익(주식12)	3,767,365,000	3,767,365,000	-	3,658,836,316	3,658,836,316	-
기타수익	760,727,194	760,727,194	-	755,166,201	755,166,201	-
II. 사업비용(주식9)	11,885,114,279	11,885,114,279	-	11,485,880,639	11,485,880,639	-
1. 공익목적사업비용	11,837,344,526	11,837,344,526	-	11,485,880,639	11,485,880,639	-
(1) 사업수행비용	10,854,800,087	10,854,800,087	-	10,586,547,558	10,586,547,558	-
(2) 일반관리비용	688,800,362	688,800,362	-	645,791,115	645,791,115	-
(3) 모금비용	293,744,077	293,744,077	-	253,541,966	253,541,966	-
III. 사업이익	33,840,215	33,840,215	-	99,735,716	99,735,716	-
IV. 사업외수익	2,565,565	2,565,565	-	1,810,429	1,810,429	-
이자수익	1,626,541	1,626,541	-	1,810,429	1,810,429	-
기타보조금수익	-	-	-	-	-	-
잡이익	939,024	939,024	-	-	-	-
V. 사업외비용	193,396,395	193,396,395	-	376,034,031	376,034,031	-
반환금	169,914,670	169,914,670	-	376,023,402	376,023,402	-
잡지출	23,481,725	23,481,725	-	10,629	10,629	-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626,541	1,626,541	-	1,810,429	1,810,429	-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626,541	1,626,541	-	1,810,429	1,810,429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156,990,615)	(156,990,615)	-	(274,487,886)	(274,487,886)	-
IX. 법인세비용	-	-	-	-	-	-
X. 당기운영이익(손실)	(156,990,615)	(156,990,615)	-	(274,487,886)	(274,487,886)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27(당)기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6(전)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1. 공익법인의 개황 및 주요 사업내용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법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실시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1999년 1월 9일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본재산은 없습니다. 법인은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장은 김현훈입니다.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훈련과 복지증진
-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11) 사회복지정보·상담센터의 운영
- 12) 구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협의조정
- 13) 푸드뱅크마켓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서울특별시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처리방침

법인은 정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회계단위구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두 회계단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통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단위 구분에 따른 내부거래가 이중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합 결산서에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을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법인의 재고자산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경우 순실현가능액, 원재료 및 저장품의 경우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차 량 운 반 구	5년
비 품	5년

유형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개발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발생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는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말 검토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및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각액을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6)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은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과목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순자산

법인은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순자산으로 분류하며, 이들 자산의 취득금액을 기본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수익인식기준

법인의 사업수익은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수익

기부금수익은 기부금이 법인 또는 법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만약 기부자가 기부금을 결제하는 시점과 법인에 입금되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결제 시점에 기부금수익을 인식합니다. 현물로 기부받은 물품은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단, 기부 당시부터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익은 기부금과 동일하게 현금이나 현물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급받은 보조금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반납 예정이거나 미사용 잔액은 보조금수익이 아닌 관련 부채로 계상하고, 미사용 잔액은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보조금수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수익이 아닌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회비수익

회비수익은 회비가 법인의 예금계좌 또는 법인에 직접 입금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나,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는 합리적인 회수가능성이 확보되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산수익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미래에 관한 중요한 가정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법인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장부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요구불예금	1,106,328,665	1,386,210,803

5. 유형자산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당기>

계 정 과 목	기 초 잔 액	취득	처분 및 폐기	감가상각비	기 말 잔 액
차량운반구	31,980,000	-	-	(9,594,000)	22,386,000
비 품	74,281,646	2,108,350	-	(19,971,851)	56,418,145
계	106,261,646	2,108,350	-	(29,565,851)	78,804,145

<전기>

계 정 과 목	기 초 잔 액	취득	처분 및 폐기	감가상각비	기 말 잔 액
차량운반구	41,574,000	-	-	(9,594,000)	31,980,000
비 품	36,657,383	55,436,960	-	(17,812,685)	74,281,658
계	78,231,383	55,436,960	-	(27,406,685)	106,261,658

6. 무형자산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당기>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56,199,469	-	-	(18,203,890)	37,995,579

<전기>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64,954,001	8,099,450	-	(16,853,982)	56,199,469

7. 순자산

당기 중 법인의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잉여금
전기초(2024.1.1)	-	1,456,994,001	-	1,456,994,001	-	-
전기운영손익	-	(274,487,886)	-	(274,487,886)	-	-
전기말(2024.12.31)	-	1,182,506,115	-	1,182,506,115	-	-
당기초(2025.1.1)	-	1,182,506,115	-	1,182,506,115	-	-
당기운영손익	-	(156,990,615)	-	(156,990,615)	-	-
당기말(2025.12.31)	-	1,025,515,500	-	1,025,515,500	-	-

8. 현물기부의 내용

당기 중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내역 및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당기>

내역	금액	기부자
기부물품	4,105,965,4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58개사(명)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부물품	6,921,487	5,275,797,171	5,248,592,258	34,126,400

<전기>

내역	금액	기부자
기부물품	4,105,965,4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 58개사(명)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부물품	15,735,125	4,105,965,422	4,114,779,060	6,921,487

9. 사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법인의 당기와 전기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당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7,960,256,531	2,095,725,865	698,503,722	1,130,628,161	11,885,114,279
사업수행비용	7,960,256,531	1,492,855,375	309,392,396	1,092,295,785	10,854,800,087
일반관리비용	-	422,634,738	287,062,949	26,872,428	736,570,115
모금비용	-	180,235,752	102,048,377	11,459,948	293,744,077
합 계	7,960,256,531	2,095,725,865	698,503,722	1,130,628,161	11,885,114,279

<전기>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6,745,209,029	1,908,192,937	696,718,904	2,135,759,769	11,485,880,639
사업수행비용	6,745,209,029	1,356,623,464	355,955,296	2,128,759,769	10,586,547,558
일반관리비용	-	386,670,809	252,120,306	7,000,000	645,791,115
모금비용	-	164,898,664	88,643,302	-	253,541,966
합 계	6,745,209,029	1,908,192,937	696,718,904	2,135,759,769	11,485,880,639

10. 종업원급여

법인은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말 현재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은 없습니다(단위: 원).

내역	당기	전기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	113,946,267	114,295,727

11. 특수관계인과의 주요 거래내용

당기 중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12. 주요 거래내용

당기 중 단일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거래규모가 총자산 또는 사업수익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거래처명	계정과목	거래금액	거래내용
서울특별시	보조금수익	3,978,328,000	보조금수입
보건복지부	보조금수익	478,236,000	보조금수입
우리금융미래재단	기부금수익	400,000,000	현금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수익	200,000,000	현금기부
에스-오일(주)	기부금수익	122,000,000	현금기부
한국토요타자동차	기부금수익	110,820,450	현금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수입	2,820,100,000	현물기부
주식회사 이지바이오	기부금수입	464,040,465	현물기부
한국해양재단	기부금수입	458,490,000	현물기부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기부금수입	314,627,000	현물기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기부금수입	206,910,000	현물기부

13. 위수탁 사무

(1) 위수탁 협약내용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를 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위탁기관	서울특별시
위수탁 사무	- 광역단위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기초푸드뱅크, 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교육 등 실시 -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 관리 지원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실태조사 - 광역 및 관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통계관리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점검 -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위수탁 시설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
위수탁 협약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2) 수탁시설 결산서

수탁시설인 서울특별시 광역푸드뱅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며, 2025년 12월 31일 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요약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세 입		세 출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사업수입	950,000	사무비	626,721,601
보조금수입	730,699,000	사업비	309,038,970
후원금수입	275,600,000	재산조성비	7,123,280
이월금	221,375,724	예비비및기타	19,015,139
잡수입	2,374,487	차기이월금	269,100,221
합 계	1,230,999,211	합 계	1,230,999,211

14. 재무제표의 승인

법인의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7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